#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떨어짐

### 재 해 개 요

'15. 11월 경기도 연천군 소재 액체세제 생산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화물자동차에 제품을 상차한 후 적재함위에서 지면으로 뛰어내리던 중 지면에 머리가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

### 재해상황도





기인물(화물자동차, 팔레트)

재해상황도

# 재해발생상황

○ 재해는 화물자동차 적재함 위에서 뛰어내리던 중 적재함 바닥에 걸쳐있던 팔레트에 발이 걸리면서 불안전한 자세로 지면으로 떨어지면서 발생함

#### ※기인물(화물자동차, 팔레트)

- 최대적재량 : 3.5톤 - 배기량 : 3,933CC - 총중량 : 7.16톤

- 팔레트 제원 : 1300mm×1100mm×150mm

- 피재자는 동료작업자와 함께 화물자동차에 올라 지게차로 운반된 제품을 적재함에 쌓는 작업을 수행함
- ※ 지게차로 파레트를 적재함 위에 걸쳐놓으면 적재함위에서 파레트 위의 제품을 옮겨 적재함에 쌓음
- 적재함 뒤쪽까지 적재를 거의 마치고 적재함 측면의 문을 닫은 상황에서, 피재자가 바닥으로 뛰어 내리던 중 적재함 바닥에 걸쳐있던 팔레트에 왼쪽발이 걸리면서 머리가 먼저 지면에 부딪힘
- ※ 지면 ∼ 적재함 문 상부 높이 : 약 1.4m

## 재해발생 원인
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자가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는 발판 또는 승강설비 미설치
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음
- 근로자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화물자동차에서 작업을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함

### 동종재해 예방대책

- 화물자동차 적재함에서 적재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상하차할 수 있도록 발판 또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야 함
- 차량계하역운반기계 작업시에는 떨어짐, 끼임, 넘어짐, 붕괴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, 그 내용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해야 함
-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모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함

# 관련 법규
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(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)
  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, 작업장의 지형·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·보존하여야 하며,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2.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
  - (내용)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 대책
   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
- ▶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  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  - 1.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: 안전모